

『구미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양진오 의원 외 10명

2. 제안이유

구미시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지위 향상·복지증진 및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여성농업인 정책을 발굴하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3조)
-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7조)
-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안 제18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 기 타 : 조례안 예고(2021. 4. 21. ~ 4. 28.)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구미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1)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여성농업인들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복지증진 및 전문인력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발의된 것으로,
 - 도내 23개 지자체 중 15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관내 농가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교육 및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여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1)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